

# 겸임교원규정

- 제 정 : 1994. 3. 1.       개 정 : 2002. 9. 1.
- 폐 기 : 1999. 9.30.     개 정 : 2004. 4. 1.
- 재제정 : 1999. 10. 1.    개 정 : 2006. 8. 1.
- 개 정 : 2000. 3. 1.       개 정 : 2019. 3. 1.
- 개 정 : 2001. 3. 1.       개 정 : 2019. 6. 18.
- 개 정 : 2001. 9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이라 한다) 산업체 겸임교원(이하 “겸임교원”이라 한다)의 자격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교 겸임교원의 자격, 임용 등에 관하여 정관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자격)** 겸임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. 다만, 연구실적 물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.

1. 고등교육법 제17조, 동법시행령 제7조,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2에 규정된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
2. 산업체, 연구기관 또는 저명한 기관·단체 등에서 본교 개설 교과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3. 본교 겸임교원으로서의 출강을 소속 기관장이 동의한 자

**제4조(직급)** 겸임교원의 직급은 겸임교수로 한다.

**제5조(임용절차)** 겸임교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현장성 높은 실무 직업교육을 위한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임용기간)**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, 기간제 재임용할 수 있다.

**제7조(임용의 제한)** 겸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임용관계 서류를 부실하게 기재하였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
2. 소속 기관의 상근직을 상실한 경우
3. 제8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4. 전 학기의 출강률이 2/3에 미달한 경우
5. 전 학기의 수업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업능력이 부족한 경우
6. 배정된 강의시수가 책임강의시수 미달인 경우(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책임강의시수의 강의가

4-1-2 겸임교원 규정

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
7. 최근 임용기간 중 업적평가 평균 70점에 미달한 경우

**제8조(임무)** 겸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(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9시간 강의를 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

2. 교육관계 법령 및 본교에 관련된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

**제9조(처우)** 겸임교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9월 30일 폐기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겸임교원의 직급은 이 규정에 의거 겸임교수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